

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
운영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 2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주요기능 (안 제2조)
 -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사항에 관한 협의·조정
 -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
 -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·제보,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
 - 재난 발생시 인적·물적자원 동원, 인명구조, 피해복구 활동 참여
 -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 등

○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(안 제3조)

- 공동위원장(행정부지사, 민간위원) 2명 포함 위원 20명 이내
- 당연직위원(5명): 안전행정국장, 균형건설국장, 소방본부장, 충북지방경찰청 차장, 충청북도 부교육감
- 위촉직위원: 재난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, 재난대응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,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·단체·협회에 소속된 사람 등

4. 검토의견

- 본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 2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정을 하는 것으로
-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자연재해 이외에도 각종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졌으며,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협력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1부. 끝.